

# 2021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사업 모집공고

(재)함께일하는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 사회적경제기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9일  
(재)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

## 1. 모집개요

### ○ [모집대상]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

-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
-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,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 정부부처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
- 협동조합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

#### < 지원제외 >

- ◇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
- ◇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 
(단, 동일채무자 대출한도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대출금 잔액을 차감 후 잔여한도 내 지원가능)
- ◇ 사회적경제기업이 휴, 폐업 중인 경우
- ◇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CCC-등급일 경우
- 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에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- 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◇ 최근 1년 이내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금융 지원사업에 선정 후 포기(취소)한 기업

### ○ [모집기간] 2021년 3월 29일(월) ~ 2021년 4월 18일(일) 24:00 마감

### ○ [자금용도] 부동산 임차보증금, 시설자금, 운영자금, 대환자금

### ○ [대출조건]

구분	대출한도	상환기간	적용이자
단기자금	최대 1억원	2년(12개월 거치, 12개월 상환)	고정금리 연 2%
장기자금		4년(12개월 거치, 36개월 상환)	고정금리 연 3%

### ○ [상환방법] 원리금균등분할 상환

- ※ 거치기간동안 이자 상환
- ※ 연체 발생 시 대출이자에 3%를 가산한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
- ※ 서민금융기관(서민금융진흥원 수행기관, 신용회복위원회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국민행복기금)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, 잔여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

## 2. 선정심사

○ [심사일정] 2021년 4월 19일 ~ 5월 13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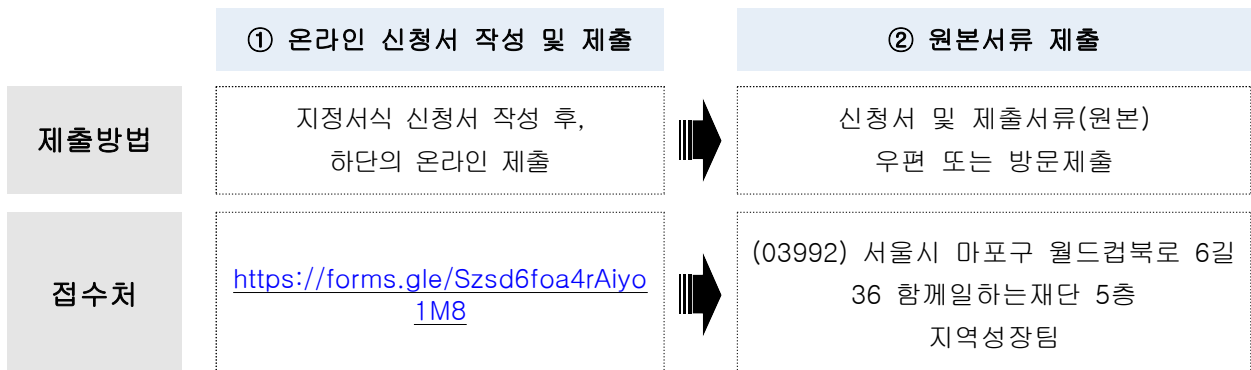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○ [심사기준] 기업 역량, 사회적 가치, 재무건전성, 발전가능성, 상환능력 등 종합평가

구분	심사기준
서류심사	• 기업역량, 기업신용, 사회적 가치, 재무건전성 등
현장실사·기업신용평가	• 제출서류 사실 및 현장 확인, 기업 종합평가 등
최종심사	• 경영능력, 자금필요성, 사회적성과, 상환가능성 등

## 3. 신청

○ [신청방법] 지정서식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및 원본서류 우편 제출



※ 신청서 온라인 접수(4/18, 24:00) 후,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서류는 4/19 우체국 우편소인분까지 인정

※ 서류심사 통과업체는 신용평가를 위해 현장실사 전, 기업신용평가사 「이크레더블 신용평가조회 신청 및 자료 작성」 필요

## ○ [제출서류]

### 1. 용자 신청서 1부 \*재단 지정서식

[붙임1] 부채현황표 1부

[붙임2] 추정 매출/현금흐름표 1부

[붙임3] 대표자 및 기업 신용정보 조회제공·이용·동의서 각 1부

[붙임4] 견적서 및 (예정)사업장 물건 현황표 1부 \*시설자금 신청하는 기업만 제출

### 2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1부

### 3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

### 4. 법인인감증명원 1부

### 5. 사회적기업 인증/지정서 사본 1부

### 6.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(원본대조필)

### 7.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(2018~2020년)

### 8.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(2019~2020년 내역)

### 9.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(부채현황표에 명시한 차입처 발급)

### 10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법인, 대표자 각 1부)

### 10. 기업소개자료 (선택)

※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

※ 제출한 신청서는 실제내용 및 계획을 기재하여야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, 대출승인 취소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※ 대출실행 후 임차보증금 및 시설자금 관련 채권확보(근저당권설정, 양도담보계약, 채권양도계약 등)를 위한 조치시행 예정

## ○ [문의처] (재)함께일하는재단 지역성장팀 (02-330-0704, 0736)